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재웅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9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정재웅 의원(1명)

찬 성 자 :권수정, 김경우, 김기대,  
김기덕, 김상진, 김수규,  
김정태, 김정환, 김제리,  
김태수, 김평남, 박기열,  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 
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  
양민규, 이상훈, 이영실,  
이정인, 임종국, 장상기,  
전석기, 정진철, 최웅식,  
홍성룡, 황규복, 황인구  
의원(3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안전총괄실 조직개편('20.11.1.)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고, 시장으로 하여금 다른 자차단체 등과 안전 분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분야 협력구축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,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 담보를 위해 반기별 실적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간사 지정에 조직 개편사항('20.11.1.)을 반영함(안 제12조제5항).
- 나.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의무를 규정함(안 제49조제4항).
- 다.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안전분야 협력사업시행 관한 임의규정을 추가 신설함(안 제50조제2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시의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한다.”를 “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효과적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안전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들 수 있으며 간사는 <u>시의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⑥ ~ ⑨ (생략)</p> 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⑤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협력위원회를 운영</u>  <u>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⑥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<u>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0조(국제교류 및 협력사업) 시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·산업체,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·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0조(국제교류 및 협력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<u>시장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안전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